

#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 ② 20×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 ③ 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 ④ 20×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 ⑤ 20×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2.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 ②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 ④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3. (주)세무는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을 ₩1,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채감법(상각률 4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재평가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0,000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차변)

(대변)

- |                   |                |
|-------------------|----------------|
| ①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건물 100,000     |
|                   | 재평가잉여금 300,000 |
| ②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 재평가잉여금 260,000 |
| ③ 감가상각누계액 360,000 | 건물 100,000     |
|                   | 재평가잉여금 260,000 |
| ④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재평가잉여금 400,000 |
| ⑤ 재평가손실 100,000   | 건물 100,000     |

4. (주)세무는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매 연말 이차지급 표시이자율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2년 말 사채관련 이차비용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마감 전에 20×1년과 20×2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0×2년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5%            | 10%     | 5%            | 10%     |
| 1  | 0.95238       | 0.90909 | 0.95238       | 0.90909 |
| 2  | 0.90703       | 0.82645 | 1.85941       | 1.73554 |
| 3  | 0.86384       | 0.75131 | 2.72325       | 2.48685 |

(차변)

(대변)

- |                |          |     |
|----------------|----------|-----|
| ①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이자비용     | 401 |
|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이자비용     | 13  |
|                | 이익잉여금    | 388 |
| ③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이익잉여금    | 401 |
| ④ 이차비용 401     | 사채할인발행차금 | 401 |
| ⑤ 이차비용 13      | 사채할인발행차금 | 401 |
| 이익잉여금 388      |          |     |

## 5. 총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총당부채로 처리한다.
- 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한다.
- ③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 ④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 ⑤ 보고기간 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 6.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 ②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 ③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예이다.
- ④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 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7. (주)세무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으로 20×1년 초 달러 표시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거래일 및 20×1년 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 구분      | 외화금액  | 환율                      |
|---------|-------|-------------------------|
| 취득원가    | \$100 | 거래일 환율(₩1,000/\$)       |
| 순실현가능가치 | \$96  | 20×1년 말 마감환율(₩1,050/\$) |

- | 장부금액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 재고자산평가손실 |
|------------|----------|------------|----------|
| ① ₩96,000  | ₩4,000   | ② ₩100,000 | ₩0       |
| ③ ₩100,000 | ₩4,000   | ④ ₩100,000 | ₩4,200   |
| ⑤ ₩100,800 | ₩0       |            |          |

8.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 20×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0이다.
- 20×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0×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

- ① ₩220,000    ② ₩260,000    ③ ₩300,000    ④ ₩320,000    ⑤ ₩365,000

9. 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① ₩5,000,000    ② ₩5,500,000    ③ ₩6,000,000    ④ ₩6,500,000    ⑤ ₩7,000,000

10. (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순공정가치 | ₩2,000,000 | ₩3,500,000 |
| 사용가치  | 1,800,000  | 2,500,000  |

- ①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 ②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 ③ 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 ④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 ⑤ 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11.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20×1년     | 20×2년     | 20×3년      | 20×4년      |
|----------|-----------|-----------|------------|------------|
| 누적발생계약원가 | ₩280,000  | ₩960,000  | ₩1,280,000 | ₩1,600,000 |
| 추정총계약원가  | 1,400,000 | 1,600,000 | 1,600,000  | 1,600,000  |

(주)세무는 2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1년, 20×2년 및 20×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 | <u>20×1년</u>  | <u>20×2년</u> | <u>20×3년</u> |
|---------------|--------------|--------------|
| ① ₩120,000 이익 | ₩280,000 손실  | ₩480,000 이익  |
| ② ₩120,000 이익 | ₩120,000 손실  | ₩320,000 이익  |
| ③ ₩120,000 이익 | ₩0           | ₩200,000 이익  |
| ④ ₩120,000 이익 | ₩120,000 이익  | ₩80,000 이익   |
| ⑤ ₩0          | ₩0           | ₩320,000 이익  |

1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 ②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 ③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 추정치이어야 한다.
- ④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3.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          |            |
|------------|----------|------------|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1,100,000 | ₩900,000 | ₩1,200,000 |

- |              |               |              |               |
|--------------|---------------|--------------|---------------|
| <u>당기손익</u>  | <u>기타포괄손익</u> | <u>당기손익</u>  | <u>기타포괄손익</u> |
| ① ₩50,000 이익 | ₩0            | ② ₩50,000 이익 | ₩200,000 손실   |
| ③ ₩0         | ₩150,000 손실   | ④ ₩50,000 손실 | ₩0            |
| ⑤ ₩50,000 손실 | ₩200,000 손실   |              |               |

14. (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       | 20×1년 | 20×2년 | 20×3년 |
|-------|-------|-------|-------|
| (주)세무 | 정률법   | 정률법   | 정액법   |
| (주)한국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연수합계법 |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 ①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 ② 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 ③ (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 ④ (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 ⑤ (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15. (주)세무는 20×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한국은 20×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 이익은?

- ① ₩60,000      ② ₩165,000      ③ ₩200,000      ④ ₩225,000      ⑤ ₩260,000

16. (주)세무의 20×1년 중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자본 증가액은? (단, (주)세무는 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다.)

|   |
|---|
| ○ 2월 1일: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에 유상증자                      |
| ○ 3월 3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000에 취득                       |
| ○ 5월 10일: 3월 3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주를 소각                    |
| ○ 7월 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15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 ○ 8월 25일: 보통주 50주를 무상감자                                 |
| ○ 9월 1일: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에 유상감자                        |
| ○ 12월 3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공정가치 주당 ₩1,200                    |

- ① ₩55,000      ② ₩105,000      ③ ₩115,000      ④ ₩125,000      ⑤ ₩235,000

17.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였다. 20×1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20×1년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월 1일: 유상증자(발행가격: 공정가치) 20%
- 7월 1일: 주식배당 10%
- 9월 1일: 자기주식 취득 1,800주
- 10월 1일: 자기주식 소각 600주
- 11월 1일: 자기주식 재발행 900주

- ① 17,750주      ② 18,050주      ③ 18,200주      ④ 18,925주      ⑤ 19,075주

18. (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          |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          |
|-----------------|----------|-----------------|----------|
| 구분              | 20×1년    | 구분              | 20×1년    |
| 기초금액            | ₩150,000 | 기초금액            | ₩120,000 |
| 당기근무원가          | 25,000   | 이자수익            | 12,000   |
| 이자비용            | 15,000   | 현금출연            | 35,000   |
| 과거근무원가          | 5,000    | 퇴직금 지급          | (3,000)  |
| 퇴직금 지급          | (3,000)  | 재측정요소           | 500      |
| 재측정요소           | (600)    | 기말금액            | ₩164,500 |
| 기말금액            | ₩191,400 |                 |          |

- ① ₩30,000      ② ₩33,000      ③ ₩40,000      ④ ₩45,000      ⑤ ₩50,000

19. (주)세무의 20×1년도 및 20×2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도 기말재고자산: ₩4,000,000(단위당 원가 ₩1,000)
- 20×2년도 매입액: ₩11,500,000(단위당 원가 ₩1,250)
- 20×2년도 매출액: ₩15,000,000

20×2년 말 장부상 상품수량은 4,000개였으나, 실지재고조사 결과 기말수량은 3,500개로 확인되었다. 20×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예상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0이며,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예상된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 ① ₩3,000,000 이익      ② ₩3,700,000 이익      ③ ₩3,875,000 이익  
 ④ ₩4,300,000 이익      ⑤ ₩4,500,000 이익



2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 ②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③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④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러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리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 (주)세무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1년도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주)세무는 이자의 지급,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상증자로 ₩250,000, 장기차입금으로 ₩300,000을 조달하였다.
- 20×1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이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설정되어 있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대손추정을 통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으로 증가하였다.
- 20×0년 경영성과에 대해 20×1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0,000을 지급하였다.
-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 부채는 각각 ₩300,000과 ₩400,000이었다.
- 당기에 유형자산을 총원가 ₩1,500,000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000은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다. 나머지 ₩6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리스부채의 상황은 20×2년 초부터 이루어진다.
- 취득원가가 ₩8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인 공장 설비를 현금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을 인식하였다.

투자활동순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               |             |
|---------------|-------------|
| ① ₩200,000 유출 | ₩350,000 유입 |
| ② ₩200,000 유출 | ₩550,000 유입 |
| ③ ₩400,000 유입 | ₩200,000 유출 |
| ④ ₩600,000 유출 | ₩350,000 유입 |
| ⑤ ₩600,000 유출 | ₩550,000 유입 |

24. (주)세무의 20×1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단, 재고자산회전을 계산 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총이익: ₩106,000
- 당기 현금매출액: ₩45,000
- 기초 매출채권: ₩60,000
- 기말 매출채권: ₩105,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
- 기초 상품재고: ₩150,000
-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

- ① 200일            ② 210일            ③ 220일            ④ 230일            ⑤ 240일

2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 ④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 ⑤ 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26. (주)세무의 지난 6개월간 기계가동시간과 기계수선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7월의 기계수선비를 ₩2,019,800으로 추정하였다면, 예상 기계가동시간은? (단, 기계수선비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 월 | 기계가동시간  | 기계수선비      |
|---|---------|------------|
| 1 | 3,410시간 | ₩2,241,000 |
| 2 | 2,430   | 1,741,000  |
| 3 | 3,150   | 1,827,000  |
| 4 | 3,630   | 2,149,000  |
| 5 | 2,800   | 2,192,500  |
| 6 | 2,480   | 1,870,000  |

- ① 2,800시간    ② 3,140시간    ③ 3,250시간    ④ 3,500시간    ⑤ 3,720시간

27. (주)세무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200,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전환원가) ₩11,800이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이다. 20×0년도에 280개를 주문 받아 판매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5%였다.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20×0년과 동일하다면 20×1년도에 ₩1,000,00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기 위한 최소 판매량은?

- ① 160개    ② 170개    ③ 180개    ④ 190개    ⑤ 200개

28. (주)세무는 결합원가 ₩15,000으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한다. 제품 A와 제품 B는 각각 ₩7,000과 ₩3,000의 추가 가공원가(전환원가)를 투입하여 판매된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 ① 23%    ② 24%    ③ 25%    ④ 26%    ⑤ 27%

29.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주)세무의 20×1년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예상 제품생산량은?

|               |               |
|---------------|---------------|
|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   | ₩896,400      |
|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 ₩1,166,400    |
|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 | 83시간          |
|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 | 81시간          |
| 실제 제품생산량      | 300개          |
| 임률차이          | ₩437,400 (불리) |

- ① 300개    ② 350개    ③ 360개    ④ 400개    ⑤ 450개

30. 다음은 (주)세무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이다. 고정판매관리비가 ₩94,000이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단위당 ₩1,500일 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            |
|------------|------------|
| 매출액        | ₩1,200,000 |
| 변동원가       | 456,000    |
| 공헌이익       | 744,000    |
| 고정원가       | 766,000    |
| 영업이익(손실)   | (22,000)   |

|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            |
|------------|------------|
| 매출액        | ₩1,200,000 |
| 매출원가       | 937,600    |
| 매출총이익      | 262,400    |
| 판매관리비      | 150,000    |
| 영업이익(손실)   | 112,400    |

- ① ₩154,000    ② ₩171,300    ③ ₩192,000    ④ ₩214,500    ⑤ ₩234,400

31. (주)세무는 가공부문(도색 및 조립)과 보조부문(수선 및 동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서비스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가공부문에 배부한다.

|    | 보조부문  |      | 가공부문  |       |
|----|-------|------|-------|-------|
|    | 수선    | 동력   | 도색    | 조립    |
| 수선 |       | 75시간 | 45시간  | 30시간  |
| 동력 | 200kw |      | 100kw | 200kw |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에 각각 집계된 원가는 ₩300,000과 ₩200,000이다. 가공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제품 A와 제품 B에 전액 배부된다. 제품 A와 제품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       | 제품 A  | 제품 B  |
|-------|-------|-------|
| 도색 횟수 | 10회   | 13회   |
| 조립시간  | 200시간 | 100시간 |

- ① ₩21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250,000    ⑤ ₩280,000

32. (주)세무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 F(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4)를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이 연간 ₩80,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F를 생산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55,000이 제품 F에 배부되며, 기존에 납부하던 연간 유희토지부담금 ₩25,000이 전액 면제된다. 제품 F를 판매할 경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연간 고정판매비를 ₩35,000만큼 줄이는 대신에 제품 F의 판매비를 단위당 ₩4씩 지급하게 된다. 제품 F의 연간 판매량이 4,000단위로 예상될 때, (주)세무의 연간 총손익에 변화가 없으려면 제품 F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 ① ₩13    ② ₩23    ③ ₩35    ④ ₩43    ⑤ ₩55



3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한다.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이며, 기말금액은 ₩15,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250,000이며,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주)세무가 당기에 매입한 재료금액은?

- ① ₩270,000    ② ₩275,000    ③ ₩280,000    ④ ₩285,000    ⑤ ₩290,000

38. 3월에 (주)세무의 매출액은 ₩70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54%이며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다.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0,000 증가시키면 매출이 3월보다 10% 증가하며 공헌이익률의 변화는 없다. (주)세무가 광고비를 ₩30,000 증가시킬 때, 4월의 영업이익은?

- ① ₩98,000    ② ₩102,100    ③ ₩115,800    ④ ₩128,500    ⑤ ₩133,800

39. (주)세무의 외상매출대금은 판매 당월(첫째 달)에 60%, 둘째 달에 35%, 셋째 달에 5% 회수된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70,000이며, 이 중 ₩60,000은 20×1년 12월 판매분이고, ₩10,000은 20×1년 11월 판매분이다. 20×2년 1월에 현금매출 ₩80,000과 외상매출 ₩350,000이 예상될 때, 매출과 관련된 20×2년 1월의 현금유입액과 1월말 매출채권 잔액은?

|   | <u>현금유입액</u> | <u>매출채권 잔액</u> |   | <u>현금유입액</u> | <u>매출채권 잔액</u> |
|---|--------------|----------------|---|--------------|----------------|
| ① | ₩335,000     | ₩145,000       | ② | ₩345,000     | ₩145,000       |
| ③ | ₩345,000     | ₩147,500       | ④ | ₩352,500     | ₩145,000       |
| ⑤ | ₩352,500     | ₩147,500       |   |              |                |

40.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크다.  
 ②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다양한 배부기준이 사용된다.  
 ③ 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활동원가의 계층구조 중 배치(묶음)수준원가는 배치 수나 활동시간 등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⑤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 민 법

41.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 ③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 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42.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 ③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 ④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 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4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 ②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④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⑤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4.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 ①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 ②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 ③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 ④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 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45.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②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③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 ④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 ⑤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
  - ③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④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47.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②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 ③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 ④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 ⑤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48.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 ②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 ③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4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 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0.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 ①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 ②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 ⑤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5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 ②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52.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 ②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④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 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총회의 결의
- ㄴ. 법인의 목적달성
- ㄷ. 설립허가의 취소
- ㄹ.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5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55.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하수
- ②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56.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5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 ③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8.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②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③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⑤ 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5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 ③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 ④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0.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 ④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61.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③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 ②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 ⑤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63.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 ④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64.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66. 진의 아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 아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님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④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67.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 ②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⑤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6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 ④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69.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③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70.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③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⑤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71.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 ②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⑤ 원시적·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7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 ③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73.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74.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 ② 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③ 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④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7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 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77.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 ②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③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 ⑤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7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④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 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80.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 ②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 ③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 ④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 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